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21. . .<br>(제 회) |      |

자 원 순 환 기 본 법 시 행 령  
일 부 개 정 령 안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 | 국무위원 ○○○<br>(환경부장관) |
| 제출 연월일 | 2021. . .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시·도별 전년대비 폐기물 소각·매립량의 증감 여부에 따라 폐기물처분 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함으로써, 시·도지사가 관할 구역내 생활폐기물 소각매립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자 함. 아울러 동물성 잔재물 중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이 순환자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제3호)

나. 시·도별 소각·매립량 증감에 따라 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(안 제25조제1항)

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 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  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##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음식물류 폐기물, 유기성(有機性) 오니류(汚泥類) 및 동물성 잔재물(殘滓物). 다만,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은 제외한다.

제2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시·도지사: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전체 시·도 중 인구 대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액이 적은 하위 4개 시도의 경우에는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20을 가산하고 인구 대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액이 많은 상위 4개 시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삭감한다.

가. 전년도에 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액이 감소한 경우 :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60.

나. 전년도에 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액이 증가한 경우 :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40.

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     정          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조(순환자원의 인정기준) 법<br>제9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<br>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<br>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<br>말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3조(순환자원의 인정기준) 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~ 2.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~ 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<br>또는 물건이 아닐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. -----<br>----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가. 음식물류 폐기물, 유기성<br>(有機性) 오니류(汚泥類) 및<br><u>동물성 잔재물(殘滓物)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. 음식물류 폐기물, 유기성<br>(有機性) 오니류(汚泥類) 및<br><u>동물성 잔재물(殘滓物)</u> . 다<br><u>만,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</u><br><u>폐패각은 제외한다.</u> |
| 나. ~ 다.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. ~ 다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~ 9.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. ~ 9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25조(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<br>부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<br>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한국<br>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폐기물<br>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<br>에 관한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<br>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8항에<br>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<br>금액을 지급한다. | 제25조(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<br>부) ①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|

1. 시·도지사: 그 징수한 폐기물  
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  
0분의 70

2. (생략)  
② (생략)

1. 시·도지사: 다음 각 목에 따  
른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전체  
시·도 중 인구 대비 폐기물  
처분부담금 부과액이 적은 하  
위 4개 시도의 경우에는 그 징  
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  
산금의 100분의 20을 가산하  
고 인구 대비 폐기물처분부담  
금 부과액이 많은 상위 4개 시  
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 
삭감한다.

가. 전년도에 비해 폐기물처  
분부담금 부과액이 감소한  
경우 : 그 징수한 폐기물처  
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  
분의 60.

나. 전년도에 비해 폐기물처  
분부담금 부과액이 증가한  
경우 : 그 징수한 폐기물처  
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  
분의 40.

2. (현행과 같음)  
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 | (044) 201 - 7347 |